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4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윤건영·조 국·박지원

이성윤 • 이기헌 • 전현희

문정복 · 용혜인 · 이해민

백승아 · 김병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 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당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이하 "피신고인"이라한다)"로 한다.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을 "피해 근로자등을"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등과 피신고인이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제 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관한 신
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생 략)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 -----직장 내 괴롭힊 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하다. 등"이라 한다)나 직장 내 괴롭 힘으로 신고된 자(이하 "피신 고인"이라 한다)-----<신 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근 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 함하여 3명 이상이 조사에 참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 에는 피해근로자등과 피신고인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⑦ (생 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 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u>제76</u>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이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u>4</u>
피해근로
자등을
•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109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1177 7 619-117
<u>제76조의3제7</u>
<u>ŏ</u>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u>제76조의3제2</u> <u>항·제4항·제5항·제7항</u>,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 4. (생략)

③ (생 략)

ll 116조(과태료) (1) (현행과 같
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제76</u> 조의3제2
<u>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 제</u>
8항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